안마시술소(안마원) 지도점검표

업 소 명		개 설 자	
소 재 지		전화번호	

구 분	점 검 내 용	점검결과
시설기준	**[안마시술소]** ○ 연면적 830㎡ 이하이어야 하고,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㎡이하 이어야 한다. 다만, 욕실과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○ 안마실이 5개 이상 설치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안마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. ○ 시설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10인 이하로 하고,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은 안마사의 2분의 1로 한다.	
	[안마원] ○ 연면적 300㎡ 이하이어야 하고,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. 다만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속 기관으로 안마원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. ○ 안마원의 내부에는 시술을 받는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 외에 따로 안마실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, 외부에는 안마원 명칭 외에 "안마, 마사지, 지압, 안마 보조 자극요법"을 표기할 수 있다. ○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4명 이하로 한다.	
준수사항	○ 위생상태 적정 여부	
	○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	
	○ 무자격자의 안마행위 여부	
	○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정 여부	
	○ 퇴폐·음란행위 또는 도박 행위 여부	
	○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 부착 여부	
	○ 종업원의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 이수 여부	
	○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	
점검자 의 견		

2015. . .

점검자 직 성명 (인)

점검자 직 성명 (인)